

민간투자사업 발전을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방향



법무법인 진운

권경현 변호사

khk@jinwoonlaw.com

1. 통일에 대비한 민간투자법 제도 마련의 필요성

1. 민간투자법제도 개편 방향

통일에 대비한 민간투자제도

- 민간투자제도 도입 후 지난 20년간 민간투자사업과 민간투자법제의 경험을 향후 100년간 우리 세대가 준비해야 할 통일에 대비한 민간투자법 제도 마련으로 준비할 필요
- 독일 통일에서 통일 후 10년간 구 동독지역에 투자된 액수는 3조 1천억 마르크로 그 중 정부 지출이 1조 5천억 마르크 (1마르크 720원 환율 고려 약 750조) 비용 투입, 이 중 교통부분에 투자 액수 2100억 마르크이고, 그 중 60% 철도에 투자됨
- 대한민국 한해 예산이 약 350조인데 반해 통일비용으로 정부 부담 예상금액을 고려할 때 통일 대비 제도 개선 마련이 필요함

2. 독일 통일 당시 동독과 북한의 비교

독일 철도 및 북한 철도 비교

- 독일 통일 당시 동독 철도는 매우 낙후된 상태로 복선화율, 전철율, 신호 및 안전시스템, 역사 모두 긴급히 복구되어야 하는 상태였고 8000개 교량 중 3500개 정도가 85년이 넘은 노후한 상태로 한 번도 보수되지 않았고, 동독제국 철도 신호박스 70% 이상이 수동으로 작동되었음
- 북한 철도 총연장은 5,235km로 남한 3,329km보다 긴 철도망을 보유하나 대부분 단선구간으로 복선구간은 156km(2.9%), 전력사정이 열악하여 운행속도 3-40km 운행 (남한 ktx 시속 200km이상) - 북한 철도 현대화 작업, 전력, 통신 인프라 구축 필요

3. 통일 대비 민간투자법 보완의 필요성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

- 우리의 공식적 통일방안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을 화해, 협력 단계, 남북 연합, 통일국가 수립의 3단계로 상정함.
-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한 지역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북한지역에 확장 적용하는 것은 가능함.
- 그렇다면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이러한 남북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과 방향을 담고 있는 법이 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검토해야 함.

II.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방향

1. 북한 지역 민간투자법 적용 관련 규정

민간투자사업 기본 방향 수립

- 민간투자법 제7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정부는 남북한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개정함으로써
- 정부 정책에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북한 국토 균형 개발과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

2. 북한 지역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개정

북한지역 민자사업 일반조항

- 민간투자법 제3조의 3 (북한지역 민자사업의 적용범위 및 원칙)을 신설하여 북한지역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적용범위와 원칙에 대해 일반조항을 마련할 필요
- 남북한 통합 법제에서 북한지역에 개별 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시행에 대한 기본방향,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두는 개별 통일 준비 법개정과 별개로
- 민간투자법에 북한지역에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의 적용범위 및 원칙에 대해 일반 조항으로 가이드라인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북한 지역 민간투자사업 추진체계 마련

북한지역 민자사업 추진 체계

- 현행 민간투자법 제5조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안건에 개별 호를 추가하여 북한 지역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경우 추진 대상 사업 선정, 추진 방식, 내용 등에 대해 심의 안건으로 하는 방안 및
- 북한지역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법 제3조의 4 조항을 신설하여 별도의 북한지역 민자사업 추진 관련 심의위원회를 설립하여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북한지역 민자사업 추진의 정책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추진체계 마련 방안 등을 검토

III. 단계별 추진에서 민간투자법 개정방향

1. 단계별 추진에서의 민간투자법 적용

남북 통일의 단계별 추진

- 민간투자사업의 통일 모델에서 단계별 추진을 살펴본다면 1) 교류활성화 지원 2) 북한 시설 및 서비스 현대화 지원 3) 남북한 통합 추진
- 통신 분야를 예로 들면
 1. 북한 지역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지구, 해주특구 등 경제특구에서의 통신망인프라, 유선음성통신,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서비스등 정보화사업 추진을 하는 1단계
 2. 북한 개방이 본격화 되는 것을 전제로 북한 주요 대도시 기간망, 도시간 기간망 사업 현대화 2단계
 3. 남북한 통합 단계로 남한 부분을 북한에 동일하게 확대하는 3단계

2. 단계별 추진에서 민간투자법 개정 사항(1)

사회기반시설 예시조항 전환

-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어야 민간투자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사회기반시설을 법상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방식으로 열거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에 의해 건설, 운영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통일 대비 단계별 추진에서 필요한 부분을 적기에 추진함에 어려운 구조임.
- 사회기반시설을 예시조항으로 전환하여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에 대해 심사함으로써 민간투자법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할 필요

2. 단계별 추진에서 민간투자법 개정 사항(2)

서비스 분야 확대 방안 검토

-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예시적 조항을 통해 단계별 추진에서 필요한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응하는 반면 서비스 분야에 대해 민간투자사업의 확대를 검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내지 사회기반 서비스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함.
- 예를 들어 현재 북한 내 국제전화는 대부분 국가보위부 도청국과 통신센터 교환원을 통해 수동으로 해외 연결되고 모든 착신은 교환원을 통해 수동으로 접속되며 외국인 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동교환방식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영역의 변수가 존재하므로 사회기반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모델 및 정책 지원에 유연하게 검토, 대처 필요
 - 민간투자제도의 모델을 유연하게 통일의 단계별 상황에 따라 적용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음.

2. 단계별 추진에서 민간투자법 개정 사항(3)

부대사업 예시조항 전환

- 민간투자법 제21조에서 부대사업에 대해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填)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을 열거하여 부대사업을 인정하고 있으나,
- 부대사업 자체는 투자비 보전,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 편익 증진, 주무관청 재정부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으로 운영하고, 부대사업 자체는 예시조항으로 운영하여 민자사업의 다양한 추진을 열어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진운 대표변호사 권경현 khk@jinwoonlaw.com

서울 종로구 경운동 89-4 에스케이허브 102-405 대표전화 : 02-739-7607 팩스 : 02-739-7608